

1. 교회·선교연구소 규정

제1장 총 칙

제1조 (명칭과 위치) 본 연구소는 대신대학교 부설 교회·선교연구소라 칭하며 대신대학교 내에 둔다.

제2조 (목적) 교회를 위한 학문적·실천적 연구와 세계선교를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전반적인 사항을 연구하고 홍보함에 있다.

제3조 (사업) 본 연구소는 상기 목적을 원활히 수행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사업을 한다.

1. 연구내용을 출판하여 보급한다.

- ㉠ 정기간행물
- ㉡ 부정기 간행물
- ㉢ 각종 홍보자료

2. 교회와 선교에 관한 각종 세미나를 개최한다.

3. 기차 아래와 같은 교회와 선교증진에 필요한 제반 사항을 연구하고 그에 따른 사업을 추진한다.

- ㉣ 한국교회가 당면한 제반의 문제점들을 역사적 개혁신학의 바탕 위에서 검토하여 바람직한 한국교회로서의 본래의 사명을 다할 수 있도록 그 방향과 방안을 제시한다.
- ㉤ 지역교회의 전도 및 선교사역의 제반활동을 조사, 연구하여 학술토론과 문서출판 등을 통해 이를 발표한다.
- ㉥ 한국교회의 발전적 연구를 위해 타 교단의 신학교 및 연구기관과 자료교환 또는 협의를 통하여 상호 협조한다.

제2장 조 직

제4조 (소장) 본 연구소를 대표하며 연구소의 운영을 총괄하기 위하여 아래와 같이 소장을 둔다.

1. 소장은 본교에 재직중인 신학전공의 조교수 이상의 교원 중에 총장이 임명하고 그 임기는 2년으로 한다.

제5조 (운영위원회) 본 연구소의 연구계획 및 운영 전반의 중요한 안건을 협의하기 위하여 아래와 같이 운영위원회를 둔다.

1. 운영위원회는 본교의 교수 중 소장이 위촉하는 약간 명(2내지 4인)의 수로 구성되며 소장이 위원장이 된다.
2. 운영위원회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.
3. 운영위원회는 위원장이 소집하고 정기회의는 매년 2월과 8월 중에 개최한다.

제6조 (연구위원) 본 연구소의 연구를 구체적으로 담당할 연구위원 약간 명(2내지 4인)을 아래와 같이 둔다.

1. 연구위원은 본교의 교수, 강사 및 각계의 전문적안사들 중에서 소장이 추천하고, 총장의 승인을 얻어 본 연구소에서 연구위원으로 위촉한다.
2. 연구위원은 운영위원회가 임명하고 총장이 인준한다.

제7조 (기타직원) 1. 본 연구소의 연구수행을 보좌할 수 있도록 직원을 두되 간사1인과 연구조교 약간 명을 둘 수 있다.

2. 직원의 임명은 소장의 추천을 받아 총장이 임명한다.

제8조 (후원회) 본 연구소의 목적과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국내외의 저명학자 및 본교단 교회의 약간 명을 운영위원회 일원으로 위촉할 수 있다.

제9조 (부서) 본 연구소의 사업을 위해 필요에 따라 각종 부서를 둘 수 있으며 소장의 통제에 따른다.

제3장 재 정

제10조 (수입원) ① 본 연구소의 재정은 독립재산을 원칙으로 하고 재정후원회를 둘 수 있다.

② 연구소의 운영비는 다음의 수입으로 충당한다.

1. 대신대학교 보조금
2. 재정후원회 보조금
3. 특별 회사금
4. 기타수입

제11조 (회계연도) 본 연구소의 회계연도는 3월 1일부터 다음해 2월 말일까지로 한다.

제12조 (총장의 승인) 본 연구소의 매년 회계의 예산 및 결산은 총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.

제13조 (재정지출) 학교보조금 및 연구소 기금으로 학교에 기탁되는 수입 및 지출은 총장의 결재에 의하여 집행되는 것을 원칙을 한다.

제14조 (개정) 본 규정의 개정은 운영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총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.

제15조 (준용) 이 규정에 명시되지 아니한 기타 일반적인 사항은 통상 관례에 준하여 시행한다.

부 칙

이 규정은 2001년 3월 2일부터 시행한다.